

##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(2022. 6. 13.~2022. 9. 10.)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초과한 2024. 2. 16.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4. 29.

#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



- 건명 :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서
- 근거 :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하단 참조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부지급 기간	부지급 사유		
임○지	1990. 2. 28.	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서	2022. 8. 12.~9. 10. (대기업, 30일)	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초과하여 신청	수취인불명	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생략(2회)

4. 공고기간 : 2024. 5. 1. ~ 2024. 5. 15. 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곽광현(Tel 02-2142-8549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